의안번호	제 222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발 의 자	이상식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9년 7월 일

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222

발의연월일 : 2019년 7월 일
발 의 자 : 이상식·박우양·임영은·박문희·이상정·하유정·송미애 의원(7인)

1. 제안 이유

○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○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과 3년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3조, 안 제6조)

○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영·기술·세무·노무·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(안 제8조)

○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,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활용 등 판로 촉진(안 제10조)

3. **조례안** : 붙임
4. **관계법령 발췌** : 붙임
5. **예산조치** : ‘19년 3천만원(도비 100%)
6. **관련부서 협의** :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와 협의
7. **입법예고** : 2019.6.20. ~ 2019.6.29.(10일간, 특이의견 없음)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중소기업협동조합”이란 도에 소재하며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, 사업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,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,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4조(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)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

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협동조합간의 협력)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,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,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정책수립) ① 도지사는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“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
2.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
3.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
4.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,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에는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7조(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)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·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활성화 촉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행할 수 있다.

제8조(경영지원 등)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영·기술·세무·노무·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 지원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할 수 있다.

제9조(교육훈련 지원)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훈련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10조(판로촉진) ① 도지사는 도 또는 산하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·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·설치·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·효율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공동사업) 도지사는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생산, 가공, 수주, 판매, 구매, 보관, 운송환경개선, 상표 등의 공동사업
2.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
3.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·판매, 시장개척

제12조(재산 또는 시설 지원) 도지사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·운영, 중소기업제품의 공동전시·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도의 재산 또는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제13조(포상)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

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

1.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

2.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

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「충청북도 포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■ 중소기업협동조합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중소기업자”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.

가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(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)을 영위하는 자

나. 중소기업협동조합

2. “중소기업관련단체”란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자로서 「민법」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.

제3조(종류 등)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협동조합(이하 “조합”이라 한다)
2. 사업협동조합(이하 “사업조합”이라 한다)
3. 협동조합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
4. 중소기업중앙회(이하 “중앙회”라 한다)

② 조합,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■ 중소기업기본법

제13조(중소기업자의 조직화)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·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의 조직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○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비용발생 요인

○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 2항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의 촉진에 관한 사업비

3. 관련 조문

○ 안 제7조(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의 촉진) 제2항

- 도지사는 제1항 활성화 촉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재정수반요인 : 중소기업협동합 활성화 및 공동사업에 관한 사업비

나. 추계의 전제 : 추계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으로 함

다. 추 계 결 과 : 190백만원(도비)

라. 재원조달방안 : 도비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(세출)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19년)	2차년도 (2020년)	3차년도 (2021년)	4차년도 (2022년)	5차년도 (2023년)
활성화 사업	190	30	30	40	40	50

※ 단위사업별 비용추계내역 : 별첨

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단위사업별 5개년(2019~2023) 투자계획

사업명	재원별	사업비(천원)					
		계	19년	20년	21년	22년	23년
활성화 사업	소 계	190,000	30,000	30,000	40,000	40,000	50,000
	도 비	190,000	30,000	30,000	40,000	40,000	50,000